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지원센터 사업 수행 범위에 ‘도시숲 등의 측정·평가’를 추가하고 시장의 책무에 도시숲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과 휴양 증진,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 개선, 탄소흡수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숲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